

제 호				
기구 및 용기·포장의 재생원료 인정서				
제품명		재질명		
재생공정 명칭				
신청인	대표자 성명		사업자 등록번호	
	업체(기관)명	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주소		
	제조시설 소재지	주소	담당자 성명	전화번호
적합 여부				
<p>「식품위생법」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생원료가 「식품위생법」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인정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직인</p>				